내일이 더 기대되는 변화의 북구

-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-

2022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보고

요 약

▢ 조사개요

○ 기　　간 : 2022. 8. 1.(월) ~ 8. 19.(금) (14일간)
○ 조사내용 : 전부서 대상 2021년도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
○ 조사방법 : 전수조사 체크리스트·증빙서류 비교 점검
○ 조 사 반 : 청렴감사팀장 외 4명

▢ 조사결과

○ 행정상 조치 : 현지처분 8건 (주의2건, 시정6건)

▢ 주요 지적사항

○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부적정
○ 취업보호대상자(국가유공자) 가점부여 부적정
○ 채용서류 반환 안내 미흡
○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

부산광역시 북구
기획감사실

2022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보고

공공기관 채용분야 비리 근절과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리 구 채용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. -市 청렴감사담당관 [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계획] 관련임

Ⅰ 조사개요

□ **추진배경**

○ 2021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문화위원회 요구사항
(구·군의 공무직 등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 필요)

○ 부산시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계획
(청렴감사담당관-12132, 2022. 7. 8.)

□ **조사기간** : 2022. 8. 1.(월) ~ 8. 19.(금) (14일간)

□ **조사대상 : 구 본청 전 부서**

□ **조사범위**

○ 대상기간 : 2021. 1. 1. ~ 2021. 12. 31.

○ 2021년도 신규 채용 과정의 적정성 여부 (※ 정규직 전환 미실시)

□ **조 사 반** : 청렴감사팀장 외 4명

□ **중점 확인사항** : 市 시달 전수조사 체크리스트(구·군용)에 의거 실시

○ 채용계획 수립·공고·서류·필기·면접 전형 등 채용단계의 규정 준수 여부

○ 채용계획 수립의 타당성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인

○ 응시자격 미달, 결격사유 해당자의 합격 여부 화인

○ 특별(제한경쟁)채용 방식의 적정성 여부 등

Ⅱ 조사결과

☐ 총 평

○ 공공기관 채용분야 비리 근절과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2022. 8. 1. ~ 8. 19.까지 우리 구 채용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,

○ 2021년에 전 부서에서 신규 채용한 인원은 총 387명으로, 임기제 공무원 14명, 별정직공무원 1명, 무기계약(공무직) 10명,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362명이었음.

○ 이번 조사에서는 채용공고 시 채용서류 반환 안내 미흡,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부적정,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 오적용,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 등 세부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일부 부서에서 지적되었으며, 그 외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.

○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적사항을 전파하고 자체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채용업무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.

☐ 부서별 채용실태(2021. 1. 1. ~ 2021. 12. 31.) 전수조사 ▷ 붙임1

☐ 지적사항(8건)

구 분	부서명	지적사항	비고
시정	○○○○과 ○○○○과 ○○○○과 ○○○○과 ○○○○과 ○○○○과	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부적정	
주의	○○○○과	○○○○자 가점부여 부적정 채용서류 반환 안내 미흡	
	○○○○과	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	

Ⅲ 세부 지적사항

1.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부적정

○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**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**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반환**하여야 하고,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**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의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함.**

2. 취업보호대상자(국가유공자) 가점부여 부적정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에 따르면,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「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」에 따르면 **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내인 경우 원점수로만 평가**하여야 하며 가점합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.

3. 채용서류 반환 안내 미흡

○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8조(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)에 따르면,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,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, 채용과정의 변경 등 **채용과정을 알려야 하며**, 동법 11조에 의거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**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**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반환**하여야 하고,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**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의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함.**

4.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

○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·처리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,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.

Ⅳ 행정사항

☐ 처분요구서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(해당부서) : 2022. 11. 11.(금)한

☐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(교육) 실시 및 부서장의 지도·감독 강화

붙임 1. 부서별 채용실태(2021) 1부.
2. 처분요구서일람표 1부.
3. 감사결과 현지처리요구서 8부. 끝.